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. 3. 5 선고 2014가합1076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

피고1. A

2. 주식회사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3. 5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연대하여 1,302,108,540원 및 그 중 256,438,042원에 대하여는 2014. 1. 27.부터, 431,739,667원에 대하여는 2014. 2. 28.부터, 525,042,468원에 대하여는 2014. 4. 22.부터, 80,416,910원에 대하여는 2014. 4. 29.부터,

나. 피고 A은 257,668,043원 및 그 중 257,668,006원에 대하여 2014. 2. 17.부터 각 2014. 5. 23.까지는 연 12%의,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신용보증계약의 체결

원고는,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이라 한다)과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, 피고 A과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, 피고들이 대출은행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(현재 12%)에 따른 지연손해금,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, 피고들이 대위변제일까지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최종보증료 납입일 다음 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(1.6%)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 한편, 피고 A은 피고 B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의 대위변제와 채권보전비용 지출 및 추가보증료 발생

1) 피고들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고,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[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합계 715원이다].

2)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6,259,495원을 지출하였고, 추가보증료는 2,211,280원이 발생하였다.

1	200 9. 2. 26.	400,000,000	전북은 행	2. 28 .	261,859,17 8	1,568,190515	260,290,988
2	201 0. 9. 17.	1,845,000,00 0	중소기 업 진흥 공단	4. 22 .	93,227,647	-	93,227,647
3	201 0. 12. 23.	855,000,000	"	"	431,814,82 1	-	431,814,821

1	200 9. 2. 26.	400,000,000	전북은 행	2. 28 .	261,859,17 8	1,568,190515	260,290,988
4	201 1. 9. 8.	90,000,000	우리는 행	4. 29 .	80,416,910	-	80,416,910
5	201 1. 11. 16.	170,000,000	전북은 행	2. 28 .	171,448,67 9	-	171,448,679
6	201 3. 2. 26.	255,000,000	국민은 행	1. 27 .	256,936,60 2	498,5601632,266,7506 78	256,438,0421,293,637,0 87
소 계 (순 번 1 내 지 6)	-	-	-	-	-	-	-
7	201 3. 2. 26.	255,000,000	국민은 행	2. 17 .	257,781,17 6	113,17037	257,668,006
소 계 (순 번 1 내 지 7)	-	-	-	-	-	2,379,920715	1,551,305,093

2. 판단

따라서 원고에게, 피고들은 연대하여 1,302,108,540원(= 표 6항까지의 잔액 합계금 1,293,637,087원 + 확정지연손해금 678원 + 채권보전비용 6,259,495원 + 추가보증료 2,211,280원) 및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, 피고 A은 257,668,043원(= 표 7항 잔액 257,668,006원 + 확정지연손해금 37원) 및 주문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재판장판사이형주

판사이우용

판사유지상